
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동의자	성명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	
동의내용	사업면적	(㎡)	
	사업유형	[] 주거상업고밀지구 [] 주거산업융합지구 [] 주택공급활성화지구	
	제안자(공공주택사업자)		

가. 본인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()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
동의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습니다.

-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,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
-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로 변경될 수 있음

나. 본인은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※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(지장날인)

(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자) 귀중

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			
소유권 현황	토지 (총 필지) 등기상 대지 지분 ()	소재지(공유여부)	면적(㎡), 동수
		(공유여부)	㎡
		(공유여부)	㎡
	건축물 (총 필지) 등기상 건축물 지분 ()	(허가여부)	동
		(허가여부)	동
		(허가여부)	동
		(허가여부)	동
첨부서류		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2.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1부(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)	

유의사항

-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때는 대표자 1명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표기합니다.
- 소유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(間印)을 해야 합니다.
-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, 집합건물(공동주택), 기타(상가, 창고 등 해당 용도) 등으로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